

광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합539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울 담당변호사 장병우, 김야고

피고1. B 주식회사

2. C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신동일, 정성원

변론 종결2022. 7. 8.

판결 선고2022. 8. 19.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2020.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마지막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3. 27. 체결된 신탁계약을 청구취지 2의 가.항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20. 3. 30. 접수 제52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인용)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피고 C은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열린 4회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변론에서 상대방인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기각)

가. 전제가 되는 사실

1) 피고 B은 농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C은 2016. 11. 무렵부터 아내 E와 함께 피고 B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B의 운영자금(유통 및 판매할 돼지고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7. 7. 25. 피고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7. 피고 D과 사이에 위탁자를 피고 B, 수탁자를 피고 D,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G조합(금호지점)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0. 피고 D 명의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7. 7. 무렵 피고 B의 운영자인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을 운영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 B을 주채무자, 피고 C을 연대채무자로 한 대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2017. 7. 25. 피고 C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 B을 이 사건 대여계약의 주채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대표자인 피고 C이 2018. 7. 21. 원고에게 '피고 B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갚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 B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계약의 주채무자인지 여부(= 부정)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의 운영자로서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서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 대부분을 실제로 피고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 C은 여러 차례 원고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 C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은 주로 피고 B 소유 부동산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대여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없는 점,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 B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 C

명의를 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 C과 피고 B은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주체인 점,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릴 당시 법적으로는 피고 B의 대표자도 아니었던 점(아내인 E가 대표이사였다), ▲이 사건 대여금이 대부분 피고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자기의 계산으로 원고에게서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다음 이를 다시 피고 B에 가수금으로 지급하거나 단기대여하는 거래 구조도 상정해 볼 수 있는 점, ▲설령 피고 C이 피고 B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갚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C이 위와 같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수금이나 단기대여금의 반환채권을 갖는다면 그러한 변제계획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 C의 위와 같은 발언이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 단락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부정)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6호증)을 보더라도 피고 C은 2018. 7. 21. 원고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 B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 C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는 피고 C과 아내 E가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C 단독으로 피고 B을 대표하여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수도 없었던 점,¹⁾ ▲그 밖에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D을 상대로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2020. 3. 27. 자 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달리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노재호

판사김수양

판사박건훈

별지

1)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 C이 "내가 주고 싶어도 H이 엄마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지"라고 말하는 대목도 나온다(녹취록 2쪽).